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박상혁 · 허영 · 김영환
이연희 · 김주영 · 김우영
정을호 · 김승원 · 한민수
조승래 · 김한규 · 이해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·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,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.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,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,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입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).

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(내국신용장 미개설, 관세 환급액 미지급)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

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).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“제12조까지”를 “제6조까지, 제8조부터 제12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15조, 제16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30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
4.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3(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·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·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	제25조의3(과징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3조의4, 제4조부터 <u>제12조</u> 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	3. ----- <u>제6조</u> 까지, 제8조부터 <u>제12조</u> 까지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15조</u> , <u>제16조</u> ,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	6. <u>제16조</u> ----- ----- -----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</u>

제30조의2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⑥ ~ ⑧ (생략)	<u>할 수 있다.</u> 제30조의2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</u> <u>4.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</u>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